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 연장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2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 · 강대식 · 김소희 ·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 권영진 · 신동욱 · 이현승
의원(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0.
3. 회부연월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 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0조¹⁾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하되,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10조의2는 5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 5급 직원 18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자녀 직원의 연령 정년 및 계급 정년을 자녀가 2명인 직원은 1년, 자녀가 3명인 직원은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직원은 3년씩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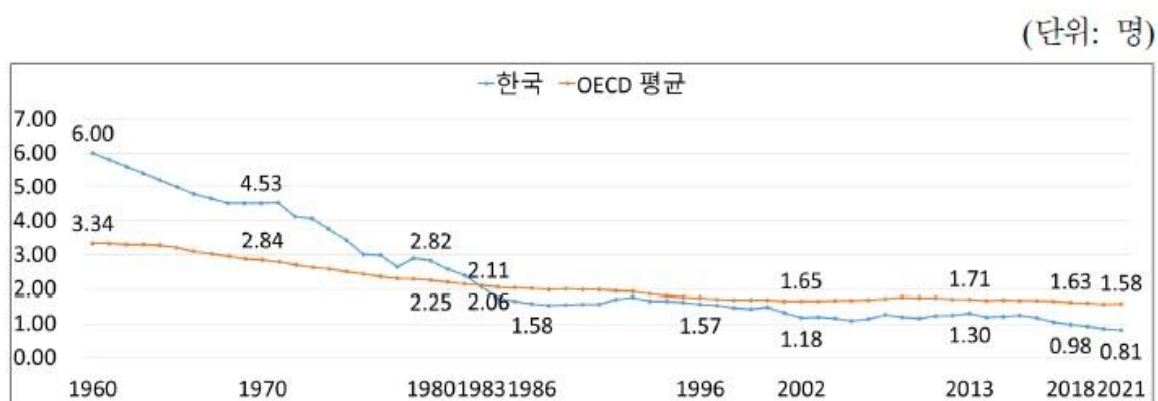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u>정년: 60세</u> <u><단서 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 특정직직원의 계급 <u>정년</u> <u><단서 신설></u> 가. ~ 라. (생략) ② · ③ (생략)	<u>제10조의2(특별승진)</u> 제10조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① ----- -----. 1.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다자녀를 둔 직원의 연령 정년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자녀가 2명인 직원: 61세 나. 자녀가 3명인 직원: 62세 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직원: 63세 2.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자녀를 둔 직원의 계급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더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²⁾은 지난 60여년 간 지속하여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며, 1983년에 2.06명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명) 미만을 가리키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이래 2002년에는 1.18명으로 초저출산(1.3명 미만) 상태에 진입하였음³⁾.

<합계출산율 추이(1960~202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3)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2.25명)보다 1.53명 낮은 수준이며, 236개 국가·지역 중 마카오(0.66명)·홍콩(0.72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⁴⁾.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임⁵⁾.

2)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3) 유재국·박선권,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국회입법조사처, 2023.

4)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23.

5)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2023.

우리나라 저출산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마음 놓고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진단한 바 있고⁶⁾,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청년층이 결혼과 육아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⁷⁾가 있음.

공무원 출산에 큰 장애요인이 경제적 부담이고,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도입이 출산율과 정(+)⁸⁾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⁸⁾ 등을 감안할 때,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취업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실 정년이 60세에 미치지 못하는 점⁹⁾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 방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2023.3.

7) 진중순 외, 『초저출산 정책환경 대응을 위한 인사정책 방향 연구』, 인사혁신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인사행정학회, 2023.

8) Blancher, D. & O. Ekert-Jaffe. (1994).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evidence from a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ing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Walker, J. R. (1991). Maternity, benefits,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paper presented for the 4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Population Economics. PISA.

9) 국가정보원 직원 평균 퇴직 연령

구 분	2급	3급	4급	5급
전체 퇴직	57.5세	57.0세	56.0세	54.2세

안은 퇴직 이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 도입(안 제10조의
2)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은 소속 장관으로 하
여급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¹⁰⁾하고 있음을 고
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근무성적·경력평정·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
임용하도록 하는 실적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로
서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조치를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 비혼이나 난임 등으로 자
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차별인지와 이 같은 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실시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다자녀 공

구 분	2급	3급	4급	5급
계급정년 퇴직	57.0세	56.5세	55.7세	55.1세

주: 2014년~2023년간 퇴직 직원의 평균연령임.

전체 퇴직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명예퇴직, 기타퇴직(징계·의원면직 등) 유형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국가정보원

10)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
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원 승진 가점제 도입에 대하여 5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¹¹⁾가 있으며, 2008년 실시된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에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상 우대제도에 대하여 32.7%의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¹²⁾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다자녀 직원을 우대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공무원임용령」상 다자녀 양육 사유로 승진 우대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¹³⁾을 제출하고 있음.

둘째,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 연장(안 제22조)의 경우, 비혼 또는 난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과 더불어, 공부상의 입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계급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혜택을 각 직급 구간별로 여러 차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¹⁴⁾ 및 부부인

11) 문화일보와 전국공무원노조가 2024년 8월 전국 공무원 1,4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반대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비혼·난임 등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56.9%)이었음(전수환,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제 놓고… “저출생 대응 보상책” vs “난임·비혼 역차별”」, 2024. 8. 20. 문화일보).

12) 7개 정부부처(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중앙인사위원회) 현직 공무원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여성희망보직제, 다자녀 공무원 교육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시 다자녀 가정 우선 혜택,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는 높게 나타났으나,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에 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강제상 외, 「저출산 사회에 대응한 공무원 인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3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1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5.

직원의 경우 모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연령정년 연장 여부는 현행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연령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저출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년제도는 조직운영·역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연령정년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연령정년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동하여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계급정년의 경우 자녀 수 산출시점, 적용횟수, 경과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인사·조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¹⁵⁾.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및 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9건의 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이 4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14) “계급정년은 직급별로 적용되고 승진 시 갱신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직원이 각 직급 구간별로 1~3년의 계급정년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야기 소지”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15)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한편, 개정안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직원의 재직 중 인건비와 퇴직 후 공무원연금 급여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년연장 대상 직원의 연령·직급·호봉과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 등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급여액 산정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¹⁶⁾.

문 의 처
02) 6788-5614

16) 국회예산정책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